

기안용지

부 : 시장비 시행 세칙중 제정령 1부. .

수신처 : 서구 1 ~ 17

卷之三

三

卷之三

096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정 131621		(전화번호 75-7641)	전결규장	조항 과장
처리기간	6/18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상정과장	전경			
	상정계장				
기안책임자	유갑선	80. 5. 22(금)	발송	조	
경우	시내동 대문구 자가동 1036		9. 22	통	
수신	경동시장주식회사 대표 김진호		9. 22	제	
참조					
배속	시장내 편의시설에 대한 질의				

1. 80. 5. 16 귀하가 시장법운영에 대한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

하니 이 업무에 착수 없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시장내 시장이용자나 동 접포 및 종업원을 위한 대중음식점이나
간이 음식을 협력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식품위생법에의한 영업허록를 득하고 적하는 경우 대수의 접포로
구성된 시장내에 음식점 영업허록를 득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회신 내용

1) 질의 1) 항에 대하여 : 시장내 부대시설로 음식점을 둘 수 있음. 관인

2) 질의 2) 항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허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관인

(* 시행자 2가 2항의 질의요지는 성략로 차함)

097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상정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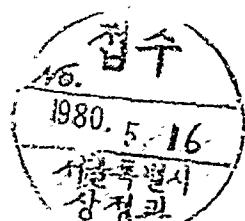
제목 시장내의 편의 시설에 대한 질의



1. 가옥 대장상 용도 표시가 시장으로 되어있는 기존 시장
예 시장 일부 규정(준칙) 제 13조 "시장에서 가지될 주요 물품의
종류"에 (시장 이용자나 시장내 ~~경매장~~ 유자회 종업원을 위한)
대중 음식점이나 간이 음식점의 ~~경매장~~ 있는지 역부 약,

2. 식품 우생법에 의한 ~~경매장~~는 경우
다수의 점포로 구성된 시장 ~~경매장~~는 경우 있는
지의 역부

유첨 시장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본 1부



서울시 동대문구 계기동 1036

경동 시장 주식 회

접수일자	접수번호	내선 번호	이사	기준
1980.5.16				
서울특별시				
상정과				
주무과				
담당자				
첨부				

1. 시장법 운영에 대한 질의

○ 영등포구청질의 (상업 1311-78)
78.1.7

1. 지하 1층과 지상 3층인 구로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경영하기 위하여 시장개설허가신청이 있는바 시장업무 규정(준칙) 제13조 시장에서 거래될 주요 물품의 종류에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이공실, 제과점, 휴게실, 병원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시설의 영업장을 제외하고 개장허가 처리한다면 부분적인 시장의 개장허가로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른 구획된 단일화 건물이 되지 않고 복합건물이 되는것임으로 시장개장허가 처리 여부

○ 서울특별시장 공단 (상경 1311-52)
78.2.1

1. 시장업무규정(준칙) 제13조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거래될 주요 물품의 종류만을 행사할것.

2. 시장법과 동시행령에 정한 시장의 개념에 부합되고 전문의 허가요건과 시설이 완비되어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실 등 수용할 수 있는 철제건물이라면 이들을 포함하여 개장허가하여도 가능하다고 봄.